

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제도개선(요약)

☐ 필기시험 개선('23. 1월 시행)

- ① 한국사, 영어 검정시험 대체 전면 도입(간부후보, 공채, 경채)
- ② 필기시험 비율 축소, 체력·면접 비율 강화(필기:체력:면접, 75:15:10 → 50:25:25)
- ③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변경(분야별 직무특성 반영)
 - * (공통)한국사, 영어, 소방학개론 + (일반)소방관계법규, (구급)응급처치학개론, (화학)화학개론, (정보통신)컴퓨터일반

☐ 체력시험 개선('23. 1월 시행)

- ① 체력시험 점수 반영비율 상향(15% → 25%)
- ② 직무 특성이 반영된 순환식 6개 종목 도입(호스끌기, 장비옮기기 등/'24.1월 시행)

☐ 면접시험 개선('23. 1월 시행)

- ① 면접시험 점수 반영비율 상향(10% → 25%)
- ② 소방 직무 적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종합적성검사 실시

☐ 자격증 등 가점분야 확대('23. 1월 시행)

- ① 자격증 종류 및 전문분야 자격확대(전문자격증, 외국어 및 국어 능력 등)

☐ 고등학교 소방관련학과 응시자격 부여('23. 1월 시행)

- ①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에 고등학교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 추가
- ② 응시연령 하한을 하향 조정(20세 → 18세)

참 고

신규채용시험 필기과목 및 가점비율(안)

□ 경력경쟁채용 필기과목(안)

현 행 (3과목)		개 선 (4과목)	
일반분야 (소방장·교·사)	국어, 영어(생활), 소방학개론	일반분야 (소방장·교·사) ※ 소방분야 포함	한국사, 영어, 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
		구급	한국사, 영어, 소방학개론, 응급처치학개론
소방분야	국어, 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	기타 분야	한국사, 영어, 소방학개론, 화학개론
		정보 통신	한국사, 영어, 소방학개론, 컴퓨터일반

□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(안)

가점비율 분야	5퍼센트	3퍼센트	1퍼센트
자격증 (면허증)	1.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·기능장 2. 1급~4급 항해사·기관사·운항사 3. 운송용 조종사, 사업용 조종사, 항공교통관제사, 항공정비사, 운항관리사 4. 잠수기능장 5. 의사, 변호사 6. 소방시설관리사 7.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	1.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. 5급 또는 6급 항해사·기관사 3. 응급구조사(1급), 간호사 4. 소방안전교육사 5.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	1.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·기능사 2. 소형선박 조종사, 잠수산업기사, 잠수기능사 3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,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. 응급구조사(2급) 5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(1종, 2종)
사무관리		컴퓨터활용능력 1급	컴퓨터활용능력 2급
국 어	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870점 이상 - KBS한국어능력시험 830점 이상 - 국어능력인증시험 182점 이상	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- KBS한국어능력시험 740점 이상 - 국어능력인증시험 172점 이상	-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-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-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

가점비율 분야		5퍼센트	3퍼센트	1퍼센트
외 국 어	영 어		- TOEIC 850 이상 - TOEFL(IBT 92, PBT 580 이상) - TEPS 800 이상 (New TEPS 452 이상) - FLEX 763 이상 - TOSEL(중앙일보 TOSEL) 780 이상 - G-TELP Level 2 82 이상	- TOEIC 650 이상 - TOEFL(IBT 57, PBT 487 이상) - TEPS 600 이상 (New TEPS 327 이상) - FLEX 553 이상 - TOSEL(중앙일보 TOSEL) 600 이상 - G-TELP Level 2 56 이상
	일 본 어		- J.L.P.T N1 - J.P.T 850 이상	- J.L.P.T N3 - J.P.T 650 이상
	중 국 어		- 신 H.S.K 6급 - 신 BCT(B) 271 이상, 신 BCT(B) L/R 901 이상 - 구 BCT(B) 901 이상	- 신 H.S.K 4급 - 신 BCT(B) 181 이상, 신 BCT(B) L/R 601 이상 - 구 BCT(B) 601 이상

비고

1. "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"이란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·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.
 - 건축, 건설기계운전, 기계장비설비·설치, 철도, 조선, 항공, 자동차, 화공, 위험물, 전기, 전자, 정보기술, 방송·무선, 통신, 안전관리, 비파괴검사, 에너지·기상
2. 국어·외국어 분야의 성적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.
3. 가점자료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면접시험 실시일까지로 한다.